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019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.

발의자 : 설훈·소병훈·위성곤
박홍근·유은혜·안민석
권칠승·조승래·신동근
이원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(feed-back)를 마련하지 않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임.

또한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.

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

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, 안 제7조제2항 신설)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 행계획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 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7조(실태 조사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실태 조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② (생 략)	